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| 규정         | 문서번호 | TWP-B220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제정일자 | 2018. 07. 09.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학홍보위원회 규정 | 개정일자 | 2025. 11. 04.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개정번호 | 페이지           | 1/3 |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위원회

부칙

|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작성부서 | 산학입학처 |         |        | 제정일자   | 2018. 07. 09. |     |
| 구 분  | 작 성   | 검 토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승 인 |
| 직 책  | 담 당   | 입학홍보센터장 | 교무학생처장 | 산학입학처장 | 부총장           | 총 장 |
| 서 명  |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일 자  |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| 규정         |  | 문서번호 | TWP-B22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제정일자 | 2018. 07. 09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학홍보위원회 규정 |  | 개정일자 | 2025. 11. 04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| 개정번호 | 페이지 3/3       |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자문기구인 대학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위원회

**제2조(위원회 설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내외 홍보자료의 발굴, 수집,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대학 홍보와 관련한 책자, 영상 제작 등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내외 홍보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한다.

## 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2. **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전부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